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. 9. 2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. 8. 14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5. 8. 18.

다. 상정일자: 제2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(2025. 8. 28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 【제안설명자: 구민안전과장 한상진】

### 가. 제안이유

○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및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내용

○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(안 별지 제7호서식)

○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에 근거한 용어 정비(안 제17조) 등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

-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 에 근거한 용어 정비
-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용청  
(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-3125호, 2024.02.21.)
- 입법예고: 2025. 6. 12.~7. 2. (제출된 의견 없음)

3. 검토보고(전문위원 유준상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및 구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① 주요 개정내용

-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(안 별지 제7호서식)

[별지 제7호서식] 뒤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'인감증명서' 를 삭제하고 '신분증' 으로 변경

- 조직 개편사항 반영(안 제17조)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제17조(재해보상)<br>③<br>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청구시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,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, 재난관리총괄부서장, 디지털재정과장, 주민생활복지과장, 의약과장, 재해보상 청구 단원의 거주지 관할 동장, 권역별 선임동장을 위원으로 한다. | 제17조(재해보상)<br>③<br>-----<br>-----<br>-----예산정책<br>과장.-----복지정책과장<br>-----<br>----- |

○ 용어 및 표현 정비(안 제17조 및 별지 제7호서식)

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」 제27조의3 제2항에 근거한 용어 수정

| 현 행  | 개 정 안   |
|--|---|
| 제17조(재해보상) ① (생 략)<br>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<br>2. 장애보상: 해당 단원의 <u>장애등급</u> 이 확정된 날<br>3. <u>장제보상</u> 및 유족보상 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<br>② (생 략)<br>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<u>청구시</u>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 | 제17조(재해보상) ① (생 략)<br>1. 요양보상: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<br>2. 장애보상: 해당 단원의 <u>장해등급</u> 이 확정된 날<br>3. <u>장례보상</u> 및 유족보상 :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<br>② (현행과 같음)<br>③ 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재해보상 <u>청구 시</u> 위원장을 포함하여 <u>9명</u> 이내로 구성 |

## 6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에 관행적 인감증명 사무 및 단순 본인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 처리에서는 신분증으로 대체하도록 변경하고 조례 조문 내 표현 오류 및 행정기구 변경사항 반영을 위한 최소한의 개정으로, 법적·행정적 정합성을 높이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5. 토론요지: 없음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8. 기타: 없음